#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이정문・신동근・김철민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도종환 · 조승래 · 서영교

변재일 · 서영석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보험원리 속에서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제도임.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연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 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 3. 「의료법」 제4조제2항 및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제47조의2제1항 중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47조의2제2항 중 "요양기관"을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하고, 같은

제47도 기 2 등 8 교 8 기 된 글 기 표기된 및 기 지 으로 하고, 끝든 조 제3항 중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제2항 각 호의 의료기관·약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42조제2항제3호·제4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기관 및 약국과 연대

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 중 "제57조제5항"을 "제57조제6항"으로 한다. 제117조 중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 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료법」 제33조제8항 또는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이 법 시행일에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제42조제2항제3호·제4호, 제5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 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단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2조제2항제3호·제4호, 제57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 제42조(요양기관) ① --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후단 삭제> 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 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이나 약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 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 서 제외한다. 1.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 설된 부속 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현 행	개 정 안
	개설된 의료기관
	3. 「의료법」 제4조제2항 및 제
	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
	운영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
	반하여 개설된 약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제2항</u> 에	<u>④</u> <u>제3항</u>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u>제2항</u>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	1. <u>제3항</u>
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u>제2항</u>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2. <u>제3항</u>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u>④</u> <u>제2항</u> 에 따라 전문요양기관	<u>⑤</u> 제3항
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	
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	
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	
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	
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	
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⑤</u> 제1항· <u>제2항 및 제4항</u> 에 따	<u>⑥</u> 제3항 및 제5항
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u>.</u>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
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	류) ①
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을 청구한 <u>요양기관이 「의료</u>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u>해당 요</u>	위반하였다는
<u>양기관</u> 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u>해</u>
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	<u>당 의료기관 및 약국</u>
단 신설>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
	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	②
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u>요양기관</u> 에 의견 제출의	<u>의료기관 또는 약국</u>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	③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현 행

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 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 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생략)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 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② (생 략)

<신 설>

#### 개 정 안

----- 의료기관 또 는 약국이 「의료법」 제4조제2 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21 조제1항-----

----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 ④ (현행과 같음)

기관(제2항 각 호의 의료기관・ 약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요 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42조 제2항제3호·제4호의 의료기관

혂 행 개 정 아 또는 약국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 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기관 및 약국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같음) 제106조(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하 제106조(소액 처리) ------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7조제4항, 제57조제5항 ----- 제57조제6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 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 제117조(벌칙) 제42조제6항-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 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 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 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